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3. 6.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19호
----------	------

제출연월일 : 2019. 3.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회계]

-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변경
 - 연무읍 황화정리산26-22번지 외 15필지 23,164㎡(토지), 1,170㎡(건물)

3.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총괄(일반회계)

○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A+C)			증감(C)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3 (25)	89,144	5,871,000	3 (32)	102,443	6,047,147	0 (7)	13,299	176,147
		건물 기타	2 (5)	9,403.91	2,106,000	2 (5)	10,284.91	2,218,870	0	881	112,870
	1.매입	토지	3 (25)	89,144	5,871,000	3 (25)	102,443	6,047,147	0 (7)	13,299	176,147
		건물 기타	2 (5)	9,403.91	2,106,000	2 (5)	10,284.91	2,218,870	0	881	112,87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가-1. 일반회계

○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A+C)			증감(C)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3 (25)	89,144	5,871,000	3 (32)	102,443	6,047,147	0 (7)	13,299	176,147
		건물 기타	2 (5)	9,403.91	2,106,000	2 (5)	10,284.91	2,218,870	0	881	112,870
	1.매입	토지	3 (25)	89,144	5,871,000	3 (25)	102,443	6,047,147	0 (7)	13,299	176,147
		건물 기타	2 (5)	9,403.91	2,106,000	2 (5)	10,284.91	2,218,870	0	881	112,87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사업별개요참조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해 당 없 음					

라. 사업별 개요

○ 일반회계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변경

□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2019. 12
- 취득위치 :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산26-22번지 일원
- 취득면적 : 토지 23,164m², 건물 1,170m²
- 사 업 비 : 864,017천원<시비100%>
- 변경사유 : 선샤인랜드의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구역 변경으로
토지 7필지(13,299m²) 추가 매입

○ 취득재산 변경내역 : 토지

(단위 : m², 천원)

연번	당 초				변 경				비고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면적		소재지	지번	면적		
계		9필지	9,865	525,000		16필지	23,164	701,147	
1	연무읍 황화정리	321-16	878	50,000	연무읍 황화정리	846	461	17,979	
2		859-20	2,200	200,000		1046-1	1,029	43,218	
3		846	461	30,000		산26-4	2,459	131,556	
4		1046-1	1,029	50,000		산26-6	1,785	65,000	
5		산26-4	2,459	90,000		산26-21	662	35,086	
6		산26-6	1,785	65,000		산26-27	261	9,396	
7		산26-21	662	25,000		산26-28	130	4,680	
8		산26-27	261	10,000		산26-22	1,154	46,160	추가매입
9		산26-28	130	5,000		산26-23	1,022	15,841	추가매입
10						산26-29	4,084	163,360	추가매입
11						576-1	948	14,788	추가매입
12						576-5	1,778	27,736	추가매입
13						576-14	1,482	23,119	추가매입
14						576-15	648	10,109	추가매입
15						584-1	3,392	60,038	추가매입
16						584-3	1,869	33,081	추가매입

○ 취득 대상 재산내역 : 건물

(단위 : m²,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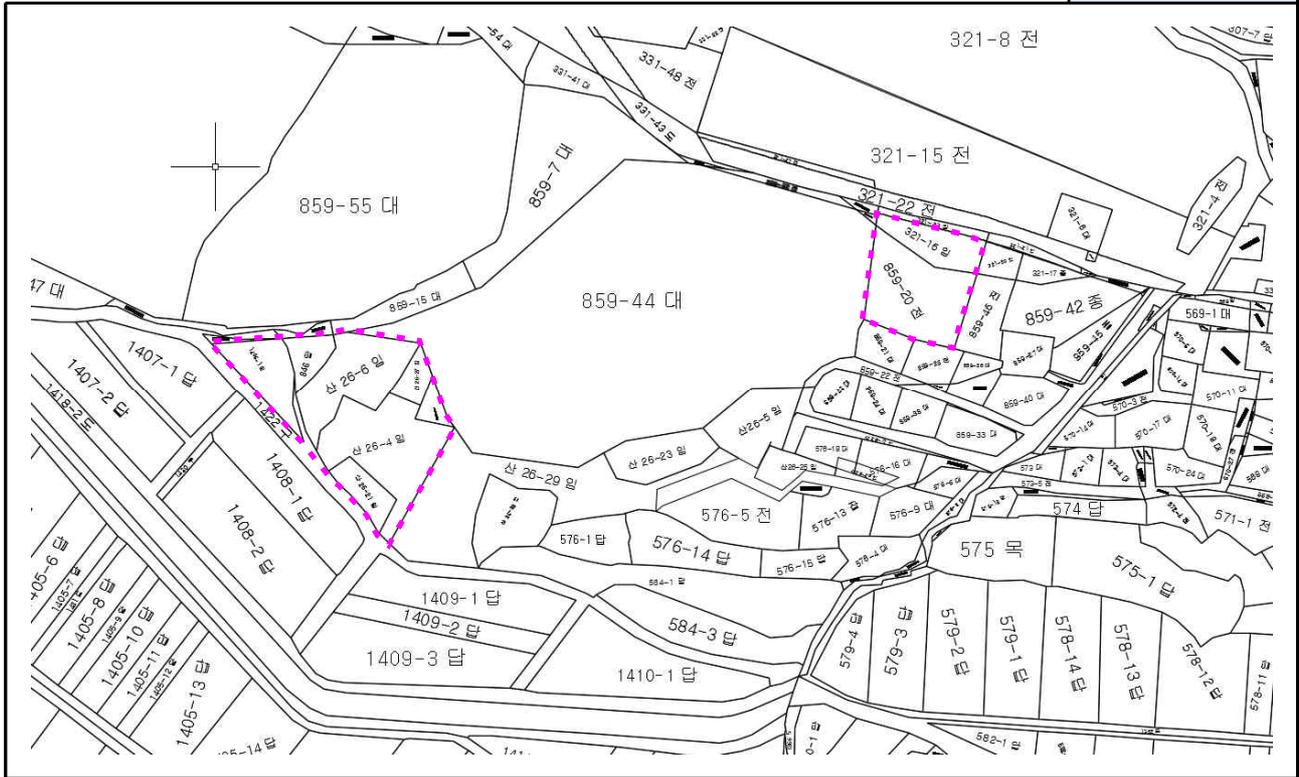
연번	당 초				변 경				비고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소재지	구조	면적		소재지	구조	면적		
1	연무읍 황화정리 산26-4	블럭	289	50,000	연무읍 황화정리 산26-4	블럭	1,170	162,87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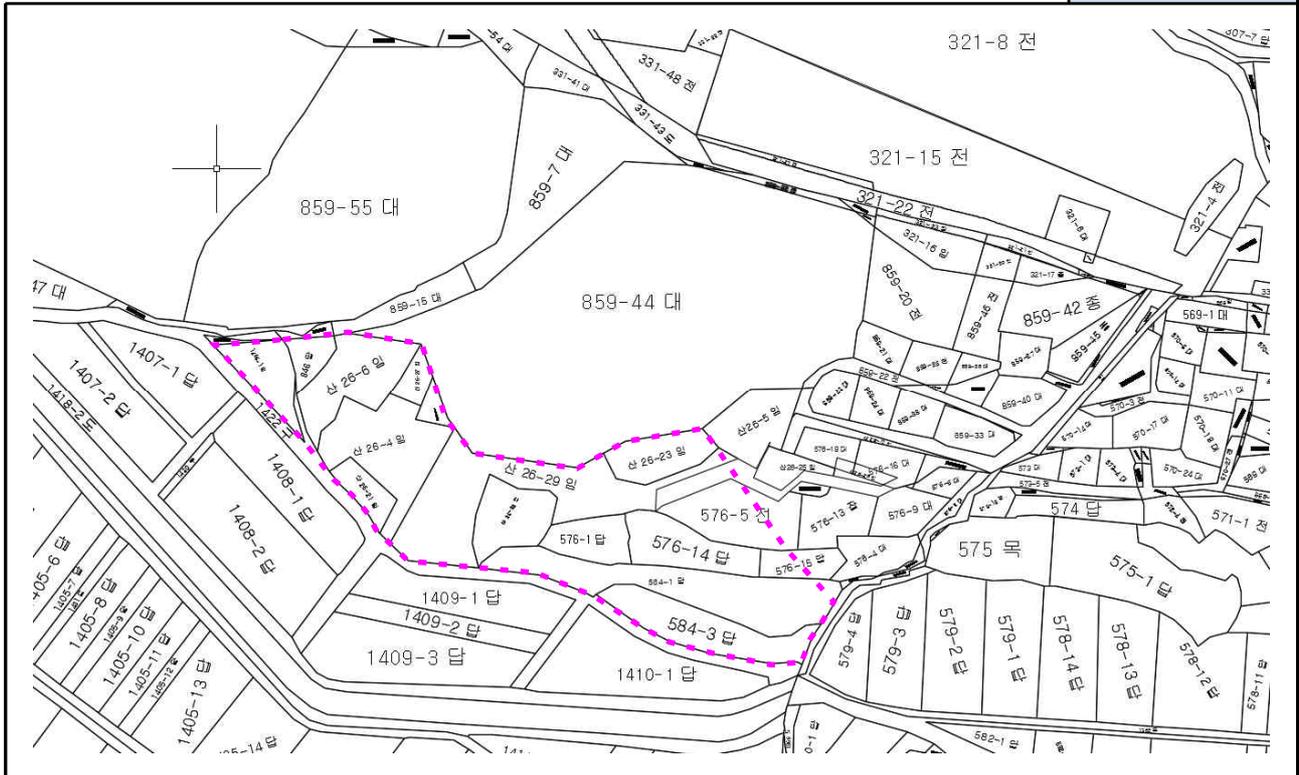
- 2018. 3. ~ 10.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1차분)
- 2018. 9. : 실시설계 완료(1차분)
- 2018. 11. : 공사 착공(1차분)
- 2019. 1. ~ 5.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2차분)
- 2019. 5. : 공사 준공(1차분)
- 2019. 6. : 실시설계 완료(2차분)
- 2019. 7. : 공사 착공(2차분)
- 2019. 12. : 공사 준공(2차분)

□ 지적도

당초



변경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